



Newsletter

2024년 12월호

제목

세무동향

- [기획재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발표](#)
- [기획재정부, 「2023 간추린 개정세법」 발간](#)

예규·판례

○ 국세청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제외대상 법인의 과세방식 선택 가능 여부](#)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 차공제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추가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임대목적 사업용자산 관련, 조특법§130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의 판정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의미](#)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계산방법](#)

2024. 12. 31

Deloitte Anjin LLC
Japanese Services Group(JSG)

세무동향

기획재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발표

정부는 11.27.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 재정지원

- 기반시설 등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
(전력망)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전폭적인 기업부담 경감방안 즉시 마련
(기반시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 마련
(인력)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첨단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 세제지원

- 국회와 협의하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추진
(적용대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포함
(공제율)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부분품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 금융지원

- 2025년 14조원 이상 정책금융 지원 및 펀드 투자 본격 집행
(대상) 소부장,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분야에 대해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공급(대출, 보증, 보험)

기획재정부, 「2023 간추린 개정세법」 발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는 매년 전년도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을 세법별로 정리한 「간추린 개정세법」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번 발간한 「2023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조세법령 중 2023 년 등 최근 공포된 개정 법률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과 개정이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기간 확대
- 기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 직무발명금 비과세 한도 상향
-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법인 세액공제 신설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 년 연장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예규·판례

[국세청]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제외대상 법인의 과세방식 선택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2344, 2024.1.11.)

■ 질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시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투자포함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 (1 안) 이전 사업연도 과세방식을 변경할 필요 없음
- (2 안) 이전 사업연도 과세방식을 변경하여야 함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철판가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1~'22 사업연도에 투자제외 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1 사업연도 19.4 억원, '22 사업연도 4.4 억원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신고함
- 질의법인은 자기자본 500 억원 초과법인에 해당되어 '23 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기 발생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예정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 19199 호, 2022.12.31.)됨에 따라 2023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32 제 1 항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내국법인이 2021 사업연도 및 2022 사업연도에 적용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32 제 6 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2023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023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 적립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이때, 2023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22 사업연도분에 대해 같은 조 제 2 항 제 2 호의 방법(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 2 항 제 1 호(투자포함방식)와 제 2 호(투자제외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2023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 2 항 제 1 호(투자포함방식)를 선택한 경우에는 2024 사업연도분도 동일한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것임

[국세청]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 차공제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추가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071, 2024.6.12.)

■ 질의

‘19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특법§30 의 4 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가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20 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 사업연도에 「‘19 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유통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 사업연도에 ‘19 사업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19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 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으로 분류됨

회신

해당 과세연도(‘19)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18)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의 4(2021.12.28. 법률 제 1863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19)의 종료일부터 1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20)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같은 조 제 2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19)의 종료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국세청] 임대목적 사업용자산 관련, 조특법§130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의 판정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의미

(기준-2024-법규법인-0073, 2024.6.28.)

■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고 렌탈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렌탈자산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는 경우, 조특법§130②의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 임대법인(자문대상법인)의 렌탈사업장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사업장(렌탈자산 사용장소)인지 여부

■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차량, 정보통신기기 및 의료장비, 사무용기기 등의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비중소기업으로, 2005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설치하였으며, 2020~2022 사업연도에 취득한 렌탈자산들(모두 이동이 가능한 자산이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
- 자문대상법인에 따르면 렌탈자산들은 모두 임차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함

회신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 130 조 제 2 항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세청]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계산방법

(서면-2023-법규법인-3395, 2024.11.5.)

■ 질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인정받은 시설과 동일한 성격의 시설에 대한 개정 전의 투자금액이 직전 3 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첨단소재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1 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에 따라 이차전지 소재 시설에 대해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인정받았음
(*) '21 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21.12.28. 법률 제 18634 호), (부칙) '21.7.1.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질의법인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인정받은 시설과 동일한 성격의 이차전지 소재 시설에 대해 2021 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 나목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 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의 2]에서 규정하는 시설로서 2021.7.1. 이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분만 포함되는 것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Japanese Services Group(JSG)

저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전세계적인 조직인 Deloitte Touche Tohmatsu LLC(이하 “DTT” 또는 “딜로이트”)의 Member Firm 으로서 DTT 의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다른 Member Firm 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하에서 고객의 Needs 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법인은 DTT 의 일본기업을 위한 전문가 서비스조직인 JSG(Japanese Services Group)의 일원으로서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에 대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된 서비스조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JSG”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JSG 는 일본어에 의한 Communication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JSG 의 서비스 내용은 웹사이트 ([한국의 일본계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Seo, Jung Wook / TEL 02-6676-1871 / juseo@deloitte.com

Lee, Ji Eun / TEL 02-6138-6680 / JiEunLee1@deloitte.com

감사합니다.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안진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 2024.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